

< 2022학년도 제5차 규정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 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교학처 (교학1팀)	31	원격수업운영 규정		○		1p
교학처 (교육혁신 지원센터)	32	교양·직업기초교육센터 운영 규정		○		18p
계			-	2	-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가. 성인학습자(재직자) 모집인원 증가 및 대학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수업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

- 관련조항: 제5조(위원회) 1항 3호

나. 교과목 사전 등록 자료 분량 조정(3주차 분량 → 2주차 분량) 및 학기별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학점 수 조정(50% → 70%)

- 관련조항: 제6조(교과목개설) 4항, 7항

다. 교수자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또는 수업운영에 관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의무 삭제

- 관련조항: 제8조(교수자의 역할) 2항

라. 원격수업의 출결 관리 절차 중 전자출결시스템 반영 내용 추가

- 관련조항: 제11조(출결관리) 4항

마. 학기당 원격수업 이수학점 조정(10학점 → 14학점)

- 관련조항: 제13조(이수학점) 2항

바. 수강신청 전 콘텐츠 제작 완료 주차 변경(3주차 → 2주차)

- 관련조항: 제16조(강의콘텐츠 개발) 7항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 붙임 1.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원격수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 2. (생략)</p> <p>3. 임명직 위원은 교학처장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등 <u>학생</u> 3인으로 한다.</p> <p>4. ~ 5. (생략)</p>	<p>제5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임명직 위원은 교학처장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등 <u>학생대표</u> 3인으로 한다.</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교과목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형태로 개설될 수 있다.</p> <p>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이론 또는 이론 + 실습 과목만 개설이 가능하며, 실습과목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은 제한하지 않는다.</p> <p>③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 및 부서에서 교학처에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p> <p>④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신청 교원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유형별 사전제작 콘텐츠 및 강의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p>	<p>제6조(교과목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신청 교원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유형별 사전제작 콘텐츠 및 강의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유형 구분</th> <th style="width: 80%;">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th> </tr> </thead> <tbody> <tr> <td>원격수업 교과목</td> <td>3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td> </tr> <tr> <td>원격수업 병행교과목</td> <td>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td> </tr> </tbody> </table>	유형 구분	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	원격수업 교과목	3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원격수업 병행교과목	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유형 구분</th> <th style="width: 80%;">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th> </tr> </thead> <tbody> <tr> <td>원격수업 교과목</td> <td><u>2주차</u>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td> </tr> <tr> <td>원격수업 병행교과목</td> <td>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td> </tr> </tbody> </table>	유형 구분	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	원격수업 교과목	<u>2주차</u>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원격수업 병행교과목	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유형 구분	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												
원격수업 교과목	3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원격수업 병행교과목	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유형 구분	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												
원격수업 교과목	<u>2주차</u>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원격수업 병행교과목	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p>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시 강의계획서</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및 강의시간표에 원격수업 교과목임을 표기하여 수강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교학처는 개설 신청한 교과목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및 상호작용 계획, 질적 수준 및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여부를 확정한다.</p> <p>⑦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부)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u>50%</u> 이내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p> <p>⑧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원격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p>	<p>⑦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부)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u>70%</u> 이내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8조(교수자의 역할)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콘텐츠를 개발한 교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반, 연구년, 퇴직, 공동개발 등으로 개발한 교원이 교과목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은 교원의 교과목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p> <p>② <u>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당 학기 시작 전까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또는 수업운영에 관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한다.</u></p> <p>③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한 담당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제8조(교수자의 역할) ① (현행과 같음)</p> <p>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당 학기 시작 전까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또는 수업운영에 관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출결관리) ① 학칙시행세칙 제19조의 3(출석인정), 제19조의 4(출석독려)에</p>	<p>제11조(출결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의거 출석, 결석 관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며, 출석 및 지각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p> <p>③ 출석인정 기준은 원격수업 수강 가이드,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한다.</p> <p>④ 원격수업의 출결관리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u>온라인 출석부를 사용하여 관리한다.</u></p>	<p>④ 원격수업의 출결관리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u>학습 현황을 확인한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 여부를 반영하여 관리한다.</u></p>
<p>제13조(이수학점)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 신청 학점은 학기별 수강 신청 최대 학점에 포함되며,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규학점으로 인정한다.</p> <p>②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는 학기당 <u>10학점</u>, 계절수업은 수업당 3학점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재난 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p> <p>③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④ 학점교류 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p>⑤ 군 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p>	<p>제13조(이수학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는 학기당 <u>14학점</u>, 계절수업은 수업당 3학점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재난 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강의콘텐츠 개발) ①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는 교과목 담당 교원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공동개발 또는 외부 수주에 따라 콘텐츠 개발,</p>	<p>제16조(강의콘텐츠 개발) ①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구매, 임차할 수 있다.</p> <p>② 대학은 원활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③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한 후 교학처로 제출한다.</p> <p>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콘텐츠 개발 승인여부 및 개발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p> <p>⑤ 콘텐츠는 학습개요(목표), 학습내용, 학습평가, 학습정리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교학처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한다.</p> <p>⑥ 학점 당 강좌 시간(강의 동영상 재생 시간)은 강좌 시간과 학습활동 시간(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을 포함하여 1시간(1학점)당 학습시간이 50분을 충족하도록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생략〉</p> <p>⑦ 수강신청 1주 전에 3주차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 완료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주차 수업 예정일 최소 2주 전까지 콘텐츠 제작 및 학습관리시스템 탑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⑧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와 함께 콘텐츠 및 자체 검수조서를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 자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⑦ 수강신청 1주 전에 2주차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 완료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주차 수업 예정일 최소 2주 전까지 콘텐츠 제작 및 학습관리시스템 탑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원격수업운영규정

제정 2021.05.07 개정 2022.02.25

개정 2023.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수업방법을 통해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인터넷 등 화상 연결이 가능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2. “비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본 대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 대응 원격수업”이란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4. “학점교류 원격수업”이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으로 협약된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5.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이란 의무 군복무 휴학으로 인해 학업이 단절된 학생이 수강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본 대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 ③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이란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원격수업 형태의 교수·학습활동 비중이 70% 미만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말한다.
- ④ “강의콘텐츠”란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교안을 말한다.
- ⑤ “교수·학습활동”이란 교수자의 직접적인 설명(또는 강의), 학습자의 질의 및 응답, 학습자의 과제물 제출, 교수자의 피드백 활동, 토론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이 수강하는 본 대학교 개설교과목의 원격수업에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원격수업에 대한 운영기준은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의한 원격(온라인)강의 및 대학·공공기관 등의 학점교류 과목 운영 등 각각의 해당 원격수업 기준을 따른다.

제4조(주관부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가 주관한다.

제5조(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술정보원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등 3인으로 한다.
3. 임명직 위원은 교학처장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등 학생대표 3인으로 한다.<개정 2023.00.00.>
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실무지원을 위하여 교학처 수업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관련 규정(지침)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

③ 실시간 원격수업, 재난대응 원격수업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제6조(교과목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형태로 개설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이론 또는 이론 + 실습 과목만 개설이 가능하며, 실습과목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 및 부서에서 교학처에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신청 교원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유형별 사전제작 콘텐츠 및 강의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3.00.00.>

유형 구분	사전 등록 자료 및 분량
원격수업 교과목	<u>2주차</u>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원격수업 병행교과목	1주차 분량의 수업 콘텐츠, 강의 계획서

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시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에 원격수업 교과목임을 표기하여 수강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학처는 개설 신청한 교과목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및 상호작용 계획, 질적수준 및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여부를 확정한다.

⑦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부)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70% 이내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00.00.>

⑧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원격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7조(강좌개설의 제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적 수준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경우 담당교원에게 콘텐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제8조(교수자의 역할)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콘텐츠를 개발한 교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반, 연 구년, 퇴직, 공동개발 등으로 개발한 교원이 교과목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텐츠를 개발 하지 않은 교원의 교과목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당 학기 시작 전까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또는 수업운영에 관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5.> <삭제 2023.00.00.>

③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한 담당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 개요 및 학습 목표 등의 기본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2. 학습자에게 충분한 학습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학습자료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
3. 질의응답 게시판과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한다.
4.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1회 이상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5. 교과목의 온라인 출석부를 확인하고 학습 참여가 미진한 학생의 학습 참여를 독려한다.
6. 기타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수업일수 및 학습기간) ① 수업 일수는 학칙 제8조(학기) 및 제9조(수업일수)에 따르며, 계절수업 은 3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칙 제31조의2(집중이수)에 따라 과목의 특성 및 교육효과 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1주분에 해당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 학습 기간은 해당 차시가 속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기 초 복학 기간과 계절수업 기간 일정을 감안하여 학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의 학점 당 강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수강신청) ①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31조의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규 교과목에 관한 관련 규정의 사항 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출결관리) ① 학칙시행세칙 제19조의 3(출석인정), 제19조의 4(출석독려)에 의거 출석, 결석 관 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며, 출석 및 지각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 : 학습기간 내 시청한 경우
2. 지각 : 기간 내 강의를 일부 시청하거나 기간이 만료 후 시청한 경우(담당교수가 설정)
3. 결석 :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③ 출석인정 기준은 원격수업 수강 가이드,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한다.

④ 원격수업의 출결관리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학습현황을 확인한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 여부를 반영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00.00.>

제12조(시험 및 평가)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출석, 퀴즈, 토론, 과제, 시험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교과목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 평가 또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평가는 부정행위 및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해 출석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4. 학점교류를 통해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③ 과제 평가 또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평가 근거자료는 4년 동안 보관한다.

④ 시험 실시 방법 및 학습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의계획서에 포함하여 게시하고, 시험 2주 전에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⑤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리 출석 차단을 목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로그인 시 로그인 보안강화를 위한 2차 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이수학점)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 신청 학점은 학기별 수강 신청 최대학점에 포함되며,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규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는 학기당 **14학점**, 계절수업은 수업당 3학점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재난 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00.00.>

③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학점교류 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⑤ 군 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분반 및 폐강)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분반을 운영하지 않으며 폐강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원격수업 교과목 강의평가) ① 총장은 매학기 2회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해당학기의 최종 강의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하인 교수자가 발생한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자에게 원격수업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 교수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자의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기준은 본 대학교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콘텐츠 제작·관리

제16조(강의콘텐츠 개발) ① 원격수업 강의콘텐츠는 교과목 담당 교원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공동개발 또는 외부 수주에 따라 콘텐츠 개발, 구매, 임차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원활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한 후 교학처로 제출한다.<개정 2022.02.25.>

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콘텐츠 개발 승인여부 및 개발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콘텐츠는 학습개요(목표), 학습내용, 학습평가, 학습정리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교학처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한다.<개정 2022.02.25.>

⑥ 학점 당 강자 시간(강의 동영상 재생 시간)은 강자 시간과 학습활동 시간(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을 포함하여 1시간(1학점)당 학습시간이 50분을 충족하도록 구성한다.

구분	총 학습시간 (강의동영상+학습활동)	강좌시간 (강의 동영상 재생시간)	학습활동시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1학점	50분 이상	25분 이상	25분 이상
2학점	100분 이상	50분 이상	50분 이상
3학점	150분 이상	75분 이상	75분 이상

⑦ 수강신청 1주 전에 **2주차**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 완료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주차 수업 예정일 최소 2주 전까지 콘텐츠 제작 및 학습관리시스템 탑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00.00.>

⑧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와 함께 콘텐츠 및 자체 검수조서를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 자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02.25.>

제17조(강의콘텐츠의 갱신 및 폐기) ① 개발된 콘텐츠는 1년을 주기로 업데이트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콘텐츠를 최대 2년 더 사용할 수 있다.

② 담당 교수는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강의콘텐츠의 관리 및 보관) 교수자는 본 대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된 해당 학기별 강의콘텐츠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외부콘텐츠 사용은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콘텐츠 제작 저작권 준수) ① 위원회는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콘텐츠의 저작인격권은 개발교원에게 귀속하고, 저작재산권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본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콘텐츠를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개발된 콘텐츠를 제3자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 교원에게 있다.

제21조(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① 교학처는 매 학기 1회 이상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개정 2022.02.25.>

② 만족도 조사는 콘텐츠, 수업운영, 시스템 만족도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심의한 후 원격수업 담당 교원에게 전달하여 원격수업 개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학처는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대학의 원격교육 콘텐츠, 수업운영, 시스템 및 정책 개선 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22.02.25.>

제5장 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제22조(재난발생에 따른 원격수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난대응 원격수업으로 전환·운영하며,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기타

제23조(준용)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과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서

1. 원격교육 콘텐츠 제목

한글

영문

2.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개발목적의 타당성, 콘텐츠 본문과 대상 교과목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십시오

3.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방법(특징)

☞ 해당 교과목이 지니고 있는 수업 방법 등의 특징을 교수-학습과 연관하여 기술하십시오.

4. 원격교육 콘텐츠의 특성

☞ 콘텐츠 부문의 독창성 또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5. 각 주차별 수업 설계

☞ 해당 교과 강의계획서에 부합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주차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관련자료	비고
1					
2					
3					
4					
5					
6					
7					
8	중간고사(직무능력평가)				
9					
10					
11					
12					
13					
14					
15	기말고사(직무능력평가)				

6. 결과물의 기대효과

7. 개발 후 원격교육 강의 의무 운영과 관련한 동의 확인

본인은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신청에 있어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경우, 향후 콘텐츠가 개발 완료되면 온라인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 익년도 부터 2년간 사이버캠퍼스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8. KOCW(강의 공개) 활용 동의 여부 확인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KOCW)를 위한 개발 원격교육 콘텐츠의 강의 공개 활용하는 것에 동의 여부를 아래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본인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과제신청 및 선정,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교학처가 지원하는 본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교학처가 지원한 본 사업 과제의 비용지급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평가 및 사용 등록을 위하여 제작업체 등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 제작 완료 기간까지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 제작지원 참여 불가

년 월 일

국제대학교총장 귀하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가. 폐과/폐전공, 모집중단학과, 신입생 미달학과 등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졸업요건 충족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나. 학과(부)의 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 이외에 타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 중 ‘전공 간 동일/유사 승인 교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해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해당 학과(부)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가.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과 유사(공통)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봄
 - 관련조항 : 제9조(교과목 이수)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규정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교학처, 간호학과
- 라. 기 타 : 2022학년도 제4차 규정 정비 중 국제대학교 규정 공포 제2022 - 26호(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규정)와 별개의 조항 개정(안)

- 붙임 1.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교과목 이수) ① 교양·직업기초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p> <p>1. ~ 3. (생 략)</p> <p>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4년제 7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고,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p> <p>③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9조(교과목 이수)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2022학년도 제4차 규정 정비 중 국제대학교 규정 공포 제2022-26호(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규정) 참고></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u>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과 유사(공통)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보며,</u>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제정	2010.07.01	개정	2010.12.24
개정	2011.12.30	개정	2013.05.01
개정	2013.12.04	개정	2014.02.07
개정	2015.04.30	개정	2016.04.20
전부개정	2018.10.19	개정	2019.09.19
개정	2019.12.27	개정	2020.09.02
개정	2021.05.07	개정	2021.12.21
개정	2022.02.25	개정	2023.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19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발”은 신설 학과 또는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에 있는 경우 또는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이나 교육목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 내에서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하위역량 및 능력단위 요소 또는 행동지표 및 수행준거의 변경과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의 개편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20.09.02.>

제4조(교육과정 개발)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4년제 과정인 경우는 4년 주기, 3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는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개정 2020.09.02., 2021.12.21.>

② 교양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별도의 개발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까지의 과정 설계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와 개발 주기에 있지 않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전년도에 설정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개편한다.

1.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2. 기존 교과목의 명칭 변경
3. 하위역량,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의 신설 및 변경<개정 2019.12.27., 2020.09.02.>
4. 교과목 이수 학기 변경
5. 교과목 학점 및 시수 변경
6. 기타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③ 교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는 인재양성유형과 산업환경변화, 수요자 의견 등 필요성과 타당성에 기반하여 신설 및 폐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른다.

제6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편성표 검토 및 심사의뢰
3. 교육과정 운영관리

② 교육과정 운영의 관련부서는 각 학과 및 교육혁신지원센터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편성표 작성
2. 교육과정 개편요청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직업기초위원회 운영<개정 2019.09.19.>

③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직업기초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개편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

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 ①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과정은 대학의 핵심역량, 하위역량 및 학과에서 도출한 전공역량 등을 반영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문식교육과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9.02.>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이상(간호과 3년제의 경우 120학점 이상), 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편성 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하, 3년제 116학점 이하(간호과 3년제의 경우 130학점 이하), 4년제 140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학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 학점에 현장실습 과목(학점)은 제외 한다.<개정 2021.12.21.>
3. 교육과정은 교양·직업기초교과, 교직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비율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09.02.>
4.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로 구분한다. 다만, 역량중심 교육특성화 교과목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09.02.>
 - 가. 교양필수/교양선택(직업기초)(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신설 2020.09.02.>
 - 나. 전공필수/전공선택(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신설 2020.09.02.>
5.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교과로 편성한다.<개정 2020.09.02.>
6. 과목당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 ~ 4학점 이내로 개설 할 수 있다.
7. 2개 학과 이상에서 개설하는 동일과목은 같은 학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8.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는 동일 교과목은 I, II, III, IV 등으로 표시한다.
9. 교직교과는 2과목(4학점)으로 편성한다.
10. 학점 당 시간 수는 1학점 당 1시간으로 편성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1. 기타 편성원칙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는 학과에서 발의하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여부는 학과에서 제출한 [별표1]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를 대학의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 결정 한다.<개정 2020.09.02.>

제8조(위원회)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2020.09.02.>

1.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역량기반 교육품질 관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0.09.02.>

2.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교육과정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9.02.>

가. 구성 : 학과 소속 전체 전임교원과 인재양성유형과 일치하는 산업체 현장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교원 또는 타 대학의 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05.07.>

나. 기능

1) 전공교육과정의 개발·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07.>

2)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주문식 교육과정 포함)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09.19.>

제9조(교과목 이수) ① 교양·직업기초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1. 교양·직업기초교과는 인성, 교양,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과로 2년제 9학점, 3년제 13학점, 4년제 2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양·직업기초교과의 내용 중 일부를 정규교과로 개설된 한국어강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19., 2021.12.21., 2022.02.25.>

2. 교양·직업기초과목은 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타 학과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9.19.>

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4년제 7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과는 전공선택 10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9.02., 2021.12.21., <2022학년도 제4차 규정 정비 중 국제대학교 규정 공포 제2022-26호(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규정) 참고> 2023.00.00.>

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고,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09.02.>

③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과 유사(공통)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보며,**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00.00.>

제10조(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① 교육과정은 입학년도에 제정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학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재입학생의 교과이수는 현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입학전에 이수한 과목은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육과정의 변경) 개발·개편된 교육과정 운영 중 자격증 또는 인증 관련 교과의 변경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9조(교과목 이수) 제1항 제3호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9조(교과목 이수)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